〈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제 20212211 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9.16 www.cowboy2014.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05.25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정 보 공 개 서

[㈜골든카우보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사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골든카우보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에이동 1108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22-523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2-341-110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22-5231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골든카우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외 4개	어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에이동 1108 회 (항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보이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4.21	2020.04.21	이 승 용	1522-5	231	032-341-1105	
법인등록번호 12111		111-0387093	사업자동	등록번호	87	2-81-0172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항아리카노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에이동 1108 호 (항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이사	이승용/ ㈜골든카우보이	FRIED COFFEE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외 4개	이 승 용	1522-5231	032-341-11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항아리카노		로구 부광로 88. 0 구로에스케이브이	
사내이사	소주희/ 사내이사 ㈜골든카우보이	B에디가도 FRIED COFFEE 외 4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 승 용	1522-5231	032-341-1105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_	_	-	_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_	_	_	_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_	_	-	_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_	_	-	_

당사는 2020년 4월 21일부로 "골든카우보이"에서 "㈜골든카우보이"로 법인변경 하였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항아리카노 FRIED COFFEE]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예술의 본고장 명동의 근대성과 커피와의 감성적 공간연출 커피류, 차류, 에이드류, 칵테일 음료와 간식류의 결합				
상 호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OOOO점					
상표(서비스표)	さいりかた FRIED COFFEE	출원번호: 4020230041610 등록번호: - (29류) (30류) (43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 기 순이익
2023년	1,698,120	236,461	1,461,659	2,060,410	121,429	116,456
2022년	1,569,146	223,943	1,345,203	3,049,937	179,049	182,545
2021년	1,417,519	254,862	1,162,657	2,974,866	810,688	682,80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전인어구	VI =	2 77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 승 용	대표이사	2015.02.24 ~ 현재	대표이사	업무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오 주 희	사내이사	2015.03.16 ~ 현재	사 내 이 사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 년 12월 31일	2	0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골든카우보이	가맹사업 경영	2016.10.25. ~ 2020.4.20	혜화동 돈까스극장 (등록번호: 20160464)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 경영
		_	2020.4.21.~ 현재	혜화동 돈까스극장 (등록번호: 20160464)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 경영
기매부터			2020.4.21.~ 현재	돈가스방앗간 (등록번호: 20200889)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사업 경영
가맹본부 ㈜골든카우보이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예정	무적의 태권삼겹 (등록번호: 2021221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예정	휘모리 호로록떡볶이 (등록번호: 20212212)이라는 영업표지의 분식 사업 경영

[☞] 당사는 2020년 4월 21일부로 "㈜골든카우보이"로 법인변경 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CFTIDI	그나는 LOUI 그내	1100	등 요 등 느	TI시III시디O	LI 0 1	가스니다	
さんけん	TIOIUIJI	사용들	어쓸이는	지식재산권은	나금뽀	걸합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서비스표)	황の归카노 FRIED COFFEE	출원일:2023.03.08 등록일: -	4020230041610 - (29류) (30류) (43류)	이승용	-

당사는 상표소유자인 [이승용]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 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사업 현황

- 1.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를 시작한 날 : 계약체결 사실 없음
- 2.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골든카우보이	명동예술관커피	이승용	가맹사업 시작 예정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31, 401. (역곡동 덕창빌딩)
㈜골든카우보이	명동예술관커피	이승용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에이동 1108호 (항동,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골든카우보이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이승용	가맹사업 시작 예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 88. 에이동 1108호 (항동,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 ☞ 당사는 2020년 4월 21일부로 "㈜골든카우보이"로 법인변경 하였습니다.
- 3.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커피	커피 판매업종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점 및 직영점 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	2022.12.31.			2023.12.31.		
N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	_	_	_	_	_	_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년	_	_	_	_	_	_
2022년	_	_	_	_	_	_
2021년	_	_	_	_	_	_

6. [항아리카노 FRIED COFFEE]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 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호/이름 영업표지		업종	가임	가맹점/직영점 수		
구단 영모/이란		0.0 111	등록번호	ВО	2021.12.31	2022.12.31	2023.12.31	
	돈가스방앗간	20200889	기타 외식	_	_	_		
가맹본부	㈜골든카우	혜화동 돈까스 극장	20160464	기타 외식	98/1	98/1	90/0	
보이	보이	무적의 태권삼겹	20212210	한식	_	_	_	
		휘모리 호로록떡볶이	20212212	분식	_	_	_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 가맹점 연간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연간 평균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매출액(상한)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면적 면적 면적 상한 하한 3.3m²당 3.3m²당 3.3m²당 매출액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처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_ _ _ 충북 충남 _ _ 전북 전남 _ _ 경북 경남 _ _ _ _ _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에 공급한 물류 공급량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제주

[매장 오픈 후 6개월 미만 가맹점은 상기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에 제외하고, 91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항아리카노 FRIED COFFEE]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항아리카노 FRIED COFFEE]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가맹계약 체결가맹점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광고 및 판촉 지출내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온라인 예치	_	1566-256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개인인터넷뱅킹 클릭 -> 부가서비스 클릭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클릭 -> 가맹검사업자 클릭 -> 가맹금 예치를 클릭하여 당사 예치계좌에 [12]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 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3,300	계약체결 후 15일	영업개시이 전 까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 후에는 해당 가맹비는 소멸되므로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2,200	OILH	계약해지	교육 시작 후	교육진행시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500
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면적 3.3m ² 당 금액	반환 조건	비고	
· -		33 ㎡기준 (약 10 평)	7,10	33 ㎡기준 (약 10 평)	소건		
총계	_	51,750	_	5,175		33㎡(10평)기준	
인테리어공 사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17,050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	1,705	당사	매장형태 및 사정에 따라 다소 편차 발생	
실외간판 /TV	가맹본부	5,500	공사시작 3일전	550	의 귀책 사유 가	전면4m기준 (LED간판1면) 돌출간판 등	
의탁자		2,200		220	없는 한 시공 및	주문가구, 붙박이형의자 (쇼파)별도	
장비 및 집기 (주방+홀)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27,000	물품공급 5일 이전	2,700	공이 에 반환 수 음 제 합 없	냉장고류, 튀김기, 가스화구, 상화식구이기, 씽크대 등 (식기세척기 별도)	
					주방공통집기 및 홀집기 일체		
POS	가맹본부	-	오픈3일전	-		메인포스,싸인패 드,프린터	
*별도사항 가스배관, 냉난방기, 닥트, 전기승압, 외부파사드, 철거, 인허가 가맹본부 및 자체조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별도용품	달	소모품류					
- 위 표	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힌	: 것으로 실제 지불금	금액과는	= 다를 수 있	

습니다. <u>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u>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m²당 (5.5만원, VAT포함)의 감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본사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1522–5231)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귀: 신편, 구가제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전월 매출액의 3.3%	익월 5일	_	_	말일 정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다음 월 10일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 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 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후	교육 필요시 지급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완제일까지			
점포환경개선 부담	시행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실비	주문 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_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점포를 이전할 경우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는 전액 가맹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수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서비스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 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 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골든카우보이]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가맹비(삼백삼십만원)(₩3,000,000)<부가세별도>와 교육비(금이백만원)(₩2,000,000)<부가세별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필수품목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단위: 원, 부가세포함]

ΛH	표무(다이)	공급	가격	78
군인	움득(전뒤)	상한	하한	TE
-	-	-	-	-

☞ 당사는 가맹사업 예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본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당사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_	_	_	-	_

-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서비스표)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1회 위반: 구두 경고	
[별지.3]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일시.3]삼소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3]참조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	2021.08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 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집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	항아리카노 FRIED	케다 어우	
판매업종	COFFEE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저피르 조사이크 비거 1/~~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재조정 사유 발생 →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용시아고 30월 이대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서면 통지 → 가맹본부	어구 외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와 가맹점사업자 간	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합의 후 영업지역 조	에 당합지역 제조성 전묘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 → 영업지역 변경	(선표 경조 합점 가능)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완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항 아리카노 FRIED COFFEE'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 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 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 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D-day -
당구 출동당기대행위에 대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8조 2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2항		
○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 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 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8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	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 사업자가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가 맹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에서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 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제39조
○ 기타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 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1522-523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 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_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1110 1100 11011 00	_ 1 _ 1 _ 1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 판매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1522-523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항아리카노 FRIED COFFEE]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8:00 ~ 22:00 (14시간)	1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문의 (1522-5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十正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돈ㅁ 크시	U1 <u>17</u>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국 행사)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아리카노 FRIED COFFEE]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_	48일 내외	[12p~13p]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8	-
사업 설명·상담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7~46	_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_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5~32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1	_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으로 대체	D-30(1일)	_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9~27(3일)	_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6~24(3일)	_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24~5(20일)	_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u>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u> <u>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 1588-1490 ,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u>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괴
O점포의 시 성 등의 보후화가 인 우 안 전의 인하이 등의 보후화가 인 이 그 이 이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간판교체 비용이 용이 사비용(장비·집기의을 제외 한 실내건축 공사에 일체 가 명이 되는 이 의 가 막 하게 가 사업 자가 하에 다 가 사람에 다 사업되는 비용은 제외)	O전O전OUOD <td< td=""><td>○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td><td>이 이 한 는 명 다 이 비 부 지 아 나 급 에 가 된 에 의 는 계료 해 도 는 맹 다 여 비 부 지 아 나 급 에 가 된 이 약 함 이 부 중 에 는 은 지 거 지 우 이 이 한 함 이 가 해 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td><td></td></td<>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이 이 한 는 명 다 이 비 부 지 아 나 급 에 가 된 에 의 는 계료 해 도 는 맹 다 여 비 부 지 아 나 급 에 가 된 이 약 함 이 부 중 에 는 은 지 거 지 우 이 이 한 함 이 가 해 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새롭게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 부터 3 일간	150 만원 한도	이 요 의 필
판촉장려금	매월 가맹점 매입금액의 5% 이내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	직전 2 개월 평균 매입 금액이 1000 만원 이상 가맹계약 위반사항이 없을 것 *지원조건 미충족시 지원하지 않음	가맹계약 기간	직전 2 개월 평균 매입금액이 1000~2000 만 원: 매입금액의 2% 2000 만원 초과~ 3000 만원 : 매입금액의 3% 3000 만원 초과시 : 매입금액의 5%	익월 상품대금 차감방식 으로 지원
판촉지원	매장매출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지원	본사 매장관리시스템에 의한 월별/분기별선정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 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_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_	_	_	-	_	_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항아리카노 FRIED COFFEE]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เมา
신규 교육	3일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1인당 추가금액 50만원)
수시 교육	규정없음	상호협의	_
특별 교육	규정없음	상호협의	_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522-523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2] 주방설비 및 집기리스트

주방 설비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주방 집기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별지. 2]의 리스트는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등이 상이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실제 제공되는 설비 및 물품과 각 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리스트는 양당사자간의 합의 시 제공합니다.

[별지.3]

메뉴명/상품명	권장 가격 (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기준 일시
아메리카노	1,500		
카페모카	3,500		
카푸치노	3,500		
카페라떼	2,500		
녹차	2,500	판매가격 변경시	
얼그레이	3,000	변경가격을	
잉글리시블랙퍼스트	3,000	온·오프라인 통지,	2021.08
페퍼민트	2,500	시스템 공지(홈페이지 ,	2021.00
로얄밀크티	3,500	프로그램 등) 를 통해	
자몽에이드	3,500	공지	
핫초코	3,500	0.4	
플레인요거트 스무디	3,500		
딸기요거트 스무디	3,500		
복숭아 스무디	3,500		

[별지.4]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택 주 소	
전 화 번 호	

확인서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확인서2: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 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확인서3: 비밀유지확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_ <i>,</i>

[별지.5]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1.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 행정구역 (v 표기)		<가행염사업자의 인근 가행염사업자 연광 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열 강원 충남 청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										
1 2 3 4 5 5 6 7 7 8 8 9 9 10 10 함인서4: 정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청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2 3 4 5 6 7 8 9 10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No.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3 4 5 6 7 7 8 8 9 9 10 10 함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4 5 6 6 7 8 9 9 10 함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5 6 7 8 9 10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3											
6 7 8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4											
7 8 9 10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5											
8 9 10 10	6											
9 10 10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7											
10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8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9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0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확인서4: 점포리스트 제공확인서 본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 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